



전기제품의 특허관리(Ⅱ)

특허(Patent)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실용신안 (Utility Model)

-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특허와는 달리 방법이나 장치는 보호대상이 아님



디자인 (Design)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은 물품의 디자인)

상표 (Trademark)

-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

* 상표는 상표(Trademark)와 서비스표(Service Mark)로 구분됨

출원절차 일반

- 출원전 고려사항
 - 타인에 의한 선등록 여부, 시중에 공지된 기술인지 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기술인지 등을 철저히 검

토 후 출원(출원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한 후 출원)

○ 심사관의 심사

- 기술담당분야별로 정하여진 심사관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신규성, 진보성 및 기재불비 여부 등을 심사)

○ 등록방법

- '특허결정서' 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특허청에 최초 3년 분의 등록료를 내야 함

□ 기타 주요 제도

○ 우선심사제도

- 우선심사 신청대상
 - PCT국제출원 등 외국에 국제출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Material) 마크
 -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출원
 - 특허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業)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수출 촉진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이중출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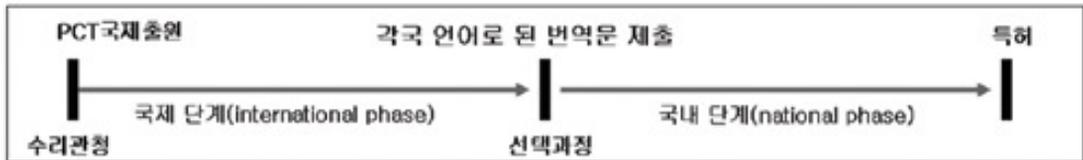
-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할 수 있는 제도
- 이중 출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 이중출원 후 1~2년의 기간동안은 실용신안권으로 권리 행사
 - 향후 특허결정이 되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특허권으로서 장기간 권리 행사
- 이중출원 가능시기
 - 특허 :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전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PCT 국제출원

-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PCT국제출원제도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23개국)간에 좀 더 쉽게 특허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1년 이내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향후 각 선택국(국제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한 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

- PCT 국제출원절차



* PCT국제출원(12개월 이내) → 영문 번역문 제출(14개월 이내) → 국제 예비심사 청구(19개월 이내) → 선택국별 국내단계 진행(30개월 이내) → 선택국별 특허심사 결정

○ BM(영업방법) 관련 발명 특허

- BM(Business Model) 특허의 의미

-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에 결합한 형태로 BM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종래의 영업 방식이 아닌 새로운 영업방식(아이디어)과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출원동향

- BM특허 출원은 지난 2001년부터 벤처기업 열풍과 BM특허 출원 붐이 사라지면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힘입어 '03년부터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2004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BM 특허 출원건수는 2,548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추세임.
- 한편, 2004년 상반기 BM부문의 특허 결정률은 17.2%로 타기술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전기전자부문 특허 결정률 : '04년 상반기 66.2%)

□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이용

○ 산업재산권 정보

-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 어떤 기술에 대한 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등이 게재된 자료

- 산업재산권정보의 활용

-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동향), 권리 취득(활용)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제공처

- 특허청 전자도서관
 - 주요국가의 특허정보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 등에게 열람, 복사, 검색서비스 제공
-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 연락처 : 전화 (02-568-6221), 팩스(02-557-8414)
- 인터넷을 통한 공보 발간(2001. 7월 이후)
 -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www.kipo.go.kr)

□ 라이선싱(Licensing)

○ 라이선싱(Licensing)의 개념

- 라이선싱의 개념은 라이선서(Licensor ; 공여기업)와 라이선시(Licensee ; 수혜기업)간에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하에 공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노하우, 등록상표, 지식, 기술공정 등의 상업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혜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 수수료 등을 받는 계약협정을 말함

○ 라이선싱 계약의 범위

- 특허권자는 실시권의 설정계약에 의해서 실시를 허락할 경우에 특허발명의 실시범위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음 즉, 실시의 장소, 기간, 실시내용 등의 범위를 정함.

○ 라이선싱(Licensing)과 프랜차이징(Franchising)

-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 영업본부)가 프랜차이지(Franchisee ; 가맹회사)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허가해주고 사업체의 조직과 경영방법의 이전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특정기업이 갖고 있는 상표나 상호의 사용권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허가해주는 동시에 원료 및 관리시스템까지 일괄 제공하여 양자가 직, 간접적으로 다같이 경영에 참가하는 것.
- 라이선싱(Licensing)과 프랜차이징(Franchising)의 차이는 프랜차이즈는 라이선스의 한 형태이지만 라이선스보다 훨씬 강한 통제를 가능하게 함. 라이선스 계약이 기술이나 브랜드만을 일정기간동안 공여하는 것에 비하여, 프랜차이즈는 품질관리, 경영방식, 기업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원과 마케팅 지원까지를 포함하며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함.